

In depth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inform.pwc.com



SAMIL 삼일회계법인

July 2014
No. 2014-03

Offsetting financial instruments for financial institutions

What's inside:

Background 1

Summary of questions 2

Detailed questions 3

At a glance

IAS 32의 상계개정은 여러 국가에 영향이 있는 규정 변화와 마찬가지로, 많은 금융기관에 회계목적 상 금융상품 상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상계는 복잡한 회계영역으로, 올바른 회계결론을 도달하기 위해 운영상 및 계약상 약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최근의 개정내용은 이러한 복잡성의 범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In Depth"에서는 실무상 접할 수 있는 주요 질문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Background

IAS 32의 상계 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내용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요건을 변경하지 않고, 실무적용 상 확인된 비일관성을 해소하고자 추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에 따라 많은 금융기관이 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측면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측면에서 금융상품 상계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중앙청산소나 거래소가 관여하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기관 주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압력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계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번 In Depth는 상계개정과 관련하여 보다 일반적인 경우를 포함한 빈번한 질문들을 다루었다.

IAS 32의 상계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복잡한 회계이슈일 수 있다. 운영상 및 계약상 약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경우에는, 회계결론을 형성하기 전에 이러한 이해의 정확성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회계결론은 다양한 법적 체계로 인해 여러 국가 간에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과 가능한 경우의 다양성으로 인해, 본 장에서는 최근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의 생각만을 정리하였다. 회계결론에 더하여, 'What we are seeing in practice'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실무상 적용이슈를 강조하였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4 PricewaterhouseCoopers LLP.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UK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Summary of questions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을 금융상품의 주요한 유형과 함께, 이 장에서 논의될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질문	Typically relevant to:			
		장외 파생상품	장내 파생상품	판매조건 거래	선물 거래
A. 상계가 검토되어야 할 잔액					
1	어떤 금융상품잔액이 상계 목적상 고려되어야 하는가?	X	X	X	X
2	현금 증거금의 일일정산에 의하여 계약이 매일 법적으로 소멸되어 상계될 현금 담보 잔액이 없는 것인가?	X	X		X
B. 현재 집행가능한 상계권리					
3	청산소/거래소가 결제과정에 적용되는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면, 상계가 적용될 수 없는가?	X	X	X	X
4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모든 파생상품에 대하여 차액으로 일일현금결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담보되지 않은 파생자산과 파생부채는 상계가 가능한가?	X	X		
5	파생상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현금 담보와 파생상품은 상계할 수 있는가?	X	X		
6	비현금 담보(예를 들어, 유가증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은 파생상품 포트폴리오 담보의 상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X	X		
7	실물결제옵션은 파생상품과 현금 담보의 상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X	X		
8	‘일방의’ 담보제공약정은 상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X	X		
9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약정에 의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동시에 결제된다면 상계요건을 만족하는가?			X	
10	서로 다른 CUSIP/ISIN의 채권에 대한 판매조건부 거래와 역판매조건부 거래는 상계 가능한가?			X	
C.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					
11	IAS 32.42(b)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의 요건은 어떤 경우에 만족되는가?			X	
12	차액으로 또는 동시에 결제할 의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어떤 증거를 입수하여야 하는가?	X	X	X	X
D. 기타 고려사항					
13	어느 회계기간이 상계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인가?	X	X	X	X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4 PricewaterhouseCoopers LLP.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UK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A. 상계가 검토되어야 할 잔액

1. 어떤 금융상품잔액이 상계 목적상 고려되어야 하는가?

IAS32.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한다면, 관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계되어야 하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상계와 관련한 IAS32.42의 두 가지 요건은 개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았다. 기업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한다:

-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IAS 32의 개정은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 “(a)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아야만 한다.
(b)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 모두의 다음 모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집행가능해야 한다:
(i)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
(ii) 채무불이행의 경우;
(iii)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 (IAS 32R.AG38B)

많은 경우에는 상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명확할 것이나, 어떤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담보제공 된 장외파생상품거래, 환매조건부 및 역환매조건부 거래, 선물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금융상품은 상계가 검토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자금공동관리약정 등의 상황이나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와 채권이 차액으로 결제되는 경우에도 상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2. 현금 증거금의 일일정산에 의하여 계약이 매일 법적으로 소멸되어 상계될 현금 담보 잔액이 없는 것인가?

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현금 증거금이 수수되는 경우, 회계상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될 것이다:

- Option A: 증거금은 완료되지 않은 계약의 부분적 결제이다; 또는
- Option B: 증거금은 담보의 제공이다. 즉, 증거금은 증거금이 담보 제공된 거래의 미래 가치에 따라 회수될 금액으로, 담보자산/부채로 별도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Option A를 적용하여 현금 지급액이 원계약에 대한 부분적 제거로 회계처리 되기 위해서는 IAS 39의 제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련 계약조건 하에서 현금 지급의 결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이다.

- IAS 39.17(a)에 따라 자산 즉, 원계약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 IAS 39.39에 따라 부채 즉, 원계약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는 경우

Option A 또는 B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약의 특정한 거래조건 및 기타 관련 조건(예를 들어, 계약이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면, 거래소의 규정이나 규칙)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원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부분적으로 결제되었는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거래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다. 현금 증거금에 의해 원계약의 법적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에는 다음이 포함될 것이다:

- 조정이자('price alignment interest')로 불리기도 하는 이자 지급액이 이전 증거금 지급액에 대하여 계산된다. 이는 경제적으로 증거금 지급액이 이자가 축적되는 대여금 또는 예치금이므로 담보라는 것을 나타낸다;
- 요구되는 증거금의 규모가 가치평가의 haircut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원계약의 가치가 더 이상 변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증거금의 일부가 (haircut)회수될 것이므로 그러한 지급액이 담보라는 것을 나타낸다;
- 이전 증거금 지급액을 대체할 수 있는 권리(즉, 현금 증거금을 상환하고 대신 유가증권으로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이전 현금 증거금이 원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What we are seeing in practice

선물거래의 증거금은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제로 본다.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의 증거금은 일반적으로 결제로 보지 않는다.

B. 현재 집행가능한 상계권리

3. 청산소/거래소가 결제과정에 적용되는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면, 상계가 적용될 수 없는가?

IAS 32 개정은 상계권리가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AG38B)고 규정하고, 관련하여 BC84 에서는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 채무불이행의 경우,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사건(예: 신용등급의 하락) 이후 소멸할 수 있거나 더 이상 집행가능하지 않게 될 상계권리는 IAS 32.42(a)의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현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청산소/거래소가 실질적이라고 판단되는, 상계권리를 소멸할 수 있거나 더 이상 집행가능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면, 상계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 이슈는 법적인 상계권리를 취소하는 것과 같은, 현재 이행 중인 계약에 대하여 유효한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LCH.Clearnet Limited ('LCH Limited')의 규칙 제 34 조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이 논의에서 규칙 제 34 조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할 때 상계권리를 취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아니라고 결론 내려졌다:

- 회원의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취소하려는 의도로, 규정을 변경할 것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LCH Limited 의 확답;
- 여러 국제 규제기관에 의한 감독과 체계적인 신용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 변경의 상황에 대한 그들의 개입 가능성;
- 그들의 고객에게 상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규정 변화에 따른 LCH Limited 의 부정적인 상업적 결과; 그리고
- 그러한 변경의 상황에서 LCH Limited 와 모든 그 회원들에 요구될 청산프로세스의 중대한 운영상의 변경.

따라서, LCH Limited 를 통해 SwapClear 또는 RepoClear 를 통한 거래에 대하여 상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권한을 보유한 다른 청산소나 거래소의 경우, 개별적인 사실과 상황을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권한이 실질적이므로 상계가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상기에 언급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What we are seeing in practice

상기에서 언급한 요소들이 규칙 제 34 조와 유사한 다른 조항에서 나타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조항들은 상계 목적상 실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 규정이 변화되는 과정을 고려할 때,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들의 본질은 거래소 별로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근거한 분석이 요구된다.

4.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모든 파생상품에 대하여 차액으로 일일현금결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담보되지 않은 파생자산과 파생부채는 상계가 가능한가?

그렇다. 단,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현금흐름이 정확하게 동일한 일자에 나타나도록 두 파생상품의 조건이 일치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기업은 파생자산(즉,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을 파생부채와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하므로, 매일의 차액 결제 프로세스 하에서, 모든 미래현금흐름이 차액으로 결제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 파생상품의 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 현금흐름은 모든 상황에서 정확하게 동일한 일자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파생자산(즉,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을 파생부채와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 간단한 예로, 한 달 후에 1 번의 잔여 현금유입만 나타날 파생자산과 두 달 후에 1 번의 잔여 현금유출만 나타날 파생부채의 경우, 그 현금흐름은 서로 다른 일자에 나타날 것이므로 차액 결제 프로세스 하에서 차액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기업은 해당 파생자산을 파생부채와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5. 파생상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현금 담보와 파생상품은 상계할 수 있는가?

간단한 예로, 기업이 은행이나 청산소와 단일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용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두 거래당사자는 정기적으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에 상응하는 현금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담보의 제공이 현재 잔액의 법적 결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담보제공약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 일방의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뿐만 아니라) 만기시점에 두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담보가 파생상품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파생상품과 담보를 차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보유한 것이고, 차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을 것이다. 시장가격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현금흐름은 발생하지 않는다. 재무상태표 상 담보잔액의 변동은 미래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며,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평가와 관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IAS 32 의 상계요건을 충족하여, 담보는 파생상품과 상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금 담보가 파생상품의 잔여 현금흐름을 결제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IAS 32 의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보다 일반적인 경우, 기업은 은행이나 청산소에 대한 단일의 파생상품계약 보다는 파생상품계약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할 것이다.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요구되는 순액의 현금 담보가 포트폴리오 내의 각 파생상품계약에 대한 개별적인 현금 담보(파생상품의 공정가치에 상응하는 각 개별 금액)의 합계와 같다면, 단일의 파생상품계약에 대한 상기의 분석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우선, 순액의 현금 담보 수수액을 포트폴리오 내 각 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한 개별 금액으로 구분한다. 각 개별 파생상품계약에 대하여, 파생상품잔액은 상기의 간단한 사례에 기술된 방식으로 관련된 담보 잔액과 상계된다. 실무적으로, 파생상품 공정가치 변동과 현금 담보 변동 사이의 시간차와 같은 요소가 없다면, 전체의 파생상품계약 포트폴리오가 현금 담보 잔액에 상계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What we are seeing in practice

파생상품계약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담보를 상계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파생상품잔액을 다른 파생상품잔액과 상계(4 번 질문 참조)한 후, 순액의 파생상품잔액과 담보를 상계하기도 한다. 이 경우 상기와 같이 파생상품계약 포트폴리오와 담보를 상계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순액 표시에 차이가 없을 것이나, 실무적으로 다른 복잡한 문제를 간과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은행과 중소기업 간 쌍방의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정상적인 사업과정 하에서 차액으로 결제되는 현금 담보 보다는 파생상품계약의 결제와는 별도의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결과, 시장가격에 변동이 없어도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이고, 따라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업과정 하에서 현금 담보가 차액으로 결제에 사용될지라도, 이것이 단지 실무상의 처리일 뿐 은행과 중소기업간 계약에 의하여 계약상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당사자들은 여전히 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

6. 비현금 담보(예를 들어, 유가증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은 파생상품 포트폴리오 담보의 상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기업이 받은 비현금 담보는 양도자 입장에서는 제거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양수자 입장에서는 재무상태표상 인식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양수자는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 잔액과 상계할 잔액이 없을 것이다. 기업이 50의 자산이 인식되는 계약과 50의 부채가 인식되는 계약을 보유한 단순한 사례에서, 부채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다면, 기업은 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50의 현금을 지급할 것이고, 50의 잔여 자산에 대한 담보로서 50의 유가증권을 받을 것이다. 그 결과, 기업은 인식된 금액(즉, 50의 자산과 50의 부채)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보유하지 않아 상계요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다.

7. 실물결제옵션은 파생상품과 현금 담보의 상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현금결제가 아닌 실물자산의 이전으로 결제되는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내에서 거래되는, 현금 담보가 제공된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이 그러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소에 지급한 현금 담보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CDS 부채를 차액 결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신용사건에 대하여 거래소는 이미 지급된 현금 담보를 유지하면서, 채권 원금과 이미 지급된 현금 담보 간의 차액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현금을 CDS의 기초자산인 사고 채권을 실물 이전하는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품계약 또한 실물결제옵션이 특징인 또 다른 사례이다.

IAS 32.AG38B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 집행가능해야 한다. 거래소가 실물결제옵션의 행사를 요구하면 기업이 이를 회피할 수 없고, IAS 32.AG38F에 따라 채권과 현금을 동시에 결제할 수 없다면, 현금 담보와 CDS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기업의 상계권리는 거래소의 결정에 따른 미래사건에 좌우되고, 모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집행가능하지 않으므로 IAS 32.AG38B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만약 실물결제옵션의 행사가 거래소가 아닌 기업의 재량으로 결정된다면, 실물결제옵션 그 자체로 상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금 담보의 회수, 실물자산의 이전 및 기타 다른 요구되는 현금의 지급(예를 들어, 행사가격의 지급)이 IAS 32.AG38F에 따라 동시에 결제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상계가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각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결제방식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요구될 것이다.

What we are seeing in practice

일부 기관들의 경우 실물결제옵션이 IAS 32.AG38 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려 하였으나, 상계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분석은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

8. ‘일방의’ 담보제공약정은 상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회사와 거래소 간 ‘일방의’ 담보제공약정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순부채 잔액인 경우에만 현금 증거금의 지급이 요구되고, 거래소가 순부채 잔액인 경우에는 현금 증거금의 지급이 요구되지 않는다. 기업이 50 의 자산이 인식되는 계약과 30 의 부채가 인식되는 계약을 보유하여 (거래소가 순부채 잔액이기 때문에) 현금 증거금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한 사례에서, 부채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다면, 기업은 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30 을 지급할 것이다. 이후 기업의 잔여 잔액은 50 의 자산이 될 것이므로, 거래소는 계속 순부채 잔액을 유지할 것이고, 따라서 ‘일방의’ 담보제공약정 하에서 어떤 증거금의 지급도 기업에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부채는 자산과 상계되지 않는다. 즉, 상계되는 경우였다면, 20 의 차액 지급만이 요구되었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보유한다는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상계로 처리될 수 없다.

What we are seeing in practice

실무적으로는 거래소와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회계적 분석이 보다 복잡할 것이다. 하나의 상황에 대해 여러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상황에서 상계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분석은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

9.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약정에 의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동시에 결제된다면 상계요건을 만족하는가?

IAS 32.42(a)에 따라, 기업은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를 포함하여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청산소/거래소와 그 회원에 대한 결제 약정에 의하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IAS 32.AG38F 에서 설명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총액결제방식(즉, 실질적으로 차액 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상적인 사업과정 하에서 거래를 결제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지급불능/파산의 경우, 실질적으로 상계하거나 차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4 PricewaterhouseCoopers LLP.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UK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 그 자신의 채무불이행/지급불능/파산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계하거나 차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기업은 정상적인 사업과정 하에서 집행가능한, 실질적인 상계결제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 사례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보유하여야 한다는 IAS 32.42(a)의 요건을 만족한다. 이러한 관점은 “상계의 권리는 계약 등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당해 채권자에게서 받을 금액으로 충당함으로써 결제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채무자의 법적 권리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IAS 32.45 와 일관성이 있다. 이 사례에서 총액은 결제 과정에서 ‘제거’되는데, 이 때 제거는 청산 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을 교환함으로써 수행되는 경우와는 다르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IAS 32.AG38F 에서는 정상적인 사업과정 하에서 결제 결과가 실질적으로 차액결제와 동일한 방식인 총액결제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10. 서로 다른 쿠십번호(Committee on Uniform Securities Identification Procedures number, “CUSIP”)/국제증권식별번호(the 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 “ISIN”)의 채권에 대한 환매조건부 거래와 역환매조건부 거래는 상계 가능한가?

IAS 32 하에서 환매조건부 거래와 역환매조건부 거래를 상계할 때, 일반적으로 상계되는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 상 인식요건을 만족하지 않았을(7 번 질문 참조) 채권 그 자체가 아니라, 환매조건부 거래에서 지급될 현금과 역환매조건부 거래에서 수취될 현금이다. 그러므로, 환매조건부 거래와 역환매조건부 거래의 기초자산인 채권이 동일하여 같은 쿠십번호(CUSIP)/국제증권식별번호(ISIN)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될 현금과 수취될 현금의 거래조건이 IAS 32 의 상계요건을 만족한다면, 상계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기초자산인 채권과 현금지급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결제기관(예를 들어, EuroClear 또는 ClearStream 과 같은 중앙증권예탁기관)을 통하여 IAS 32.AG38F 에 따라 차액으로 현금결제 되거나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결제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증권예탁기관에서 결제되는 채권의 유형은 상계의 요건을 충족한 환매조건부 거래와 역환매조건부 거래로 제한될 것이다.

C.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

11. IAS 32.42(b)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의 요건은 어떤 경우에 만족되는가?

차액 결제가 아니라도,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는 경우 IAS 32.42(b)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 환매조건부 거래와 역환매조건부 거래의 경우가 있다. 추가적인 지침으로 IAS 32.AG38F에서는 “결제 결과가 실질적으로 차액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경우, 문단 42(b)의 차액결제 기준을 충족할 것이다. 이는 총액결제방식이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제거하거나 경미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단일의 결제과정이나 결제주기 내에서 채권과 채무를 처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존재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IAS 32.AG38F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만족될 수 있는 총액결제 시스템의 사례로서 LCH Limited 의 RepoClear 에 근거한 일련의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다:

- “(a) 상계에 적합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동일한 시점에 처리를 위해 제출된다.
- (b)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처리를 위해 제출되면, 당사자들은 결제의무의 이행을 확약한다.
- (c)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처리를 위해 제출되면, 그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변동할 가능성은 없다(아래 (d) 처리 실패 경우는 제외).
- (d)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자산과 부채는 유가증권의 이전이나 이와 유사한 방식(예: 증권·대금 동시결제)으로 결제될 것이며, 따라서 유가증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관련 채권이나 채무도 처리되지 못할 것이다(이와 반대의 경우도 성립).
- (e) (d)에 요약된 바와 같이 실패하는 모든 거래는 결제될 때까지 처리과정이 반복될 것이다.
- (f) 결제는 동일한 결제기관(예: 결제은행, 중앙은행 또는 중앙예탁결제기관)을 통해 수행된다.
- (g) 결제일에 각 당사자를 위해 지급이 처리되도록 충분한 당좌대월액을 제공할 수 있는 일중(당좌)대출제도가 구비되어 있고, 이러한 일중(당좌)대출제도는 요청시 유효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러한 특징들은 IAS 32R 하에서 상계에 관한 명확한 요건은 아닐지라도, 실무적으로 IAS 32.AG38F의 원칙을 만족하는지 평가하는 데는 유용할 것이다. 서로 다른 결제기관을 이용함으로써 결제 프로세스 간에 잠재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결제 방법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결제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요구된다.

12. 차액으로 또는 동시에 결제할 의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어떤 증거를 입수하여야 하는가?

요구되는 증거의 범위는 관련 계약조건을 포함하여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계약상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도록 요구되고, (해당하는 경우) 결제 프로세스가 IAS 32.AG38F에서 설명하는 특징들을 만족한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한 계약상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고려가 그 자체로 결정적이지 않을지라도, 유사 거래에 대한 시장의 관행이나 기업 자신의 과거 관행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IAS 32.AG38F에 따라 차액으로 또는 동시에 결제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면, 보다 상세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맞춤거래의 경우, 차액으로 또는 동시에 결제하려는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충분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차액 결제와 총액 결제(또는, 동시에 결제와 서로 다른 시점의 결제)의 상업적 또는 운영 상의 의미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D. 기타 고려사항

13. 어느 회계기간이 상계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인가?

IAS 32.97L에 따라, 상계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IFRS 7에 따른 상계 공시를 포함하여 관련 주석 및 표시뿐만 아니라 비교표시기간의 재작성을 포함하여 개정내용을 소급하여야 한다. IAS 1.40A에 따라, 그 효과가 중요하다면, 전기 기초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재무상태표의 표시가 요구된다.

개정의 소급효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정 거래의 범위와 성격/직전 기간 동안 결제 규정의 변경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많은 경우에, 중앙 청산소와 거래소에 적용되는 결제 규정은 유럽시장인프라규제(the European Market Infrastructure Regulation, “EMIR”)와 같은 새로운 규제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2013년 후반 개정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한 규정 변경이 중요하다면 현재 새로운 규정의 분석뿐만 아니라, 개정의 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전 규정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